

16.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81호 1999. 3. 27.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동법시행령 제34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감리자지정권자”라 한다)가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3. 감리자 및 감리원의 자격

가. 감리자의 자격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하되,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감리자)는 제외한다.

- (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자
- (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나. 감리원의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서 건축사법·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연수교육 또는 감리원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 감리자 지정방법

가. 감리자 모집공고

(1) 공고시기 : 감리자지정권자는 사업계획 승인·공사착공 시점 등을 감안하여 감리모집공고일을 결정하되, 최소한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함

(2) 공고내용 : 사업내역·응모서류·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 목록 및 접수기한 기타 감리자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할 것

※ 제출서류는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하되, 자격증 사본·학력증명서·재무제표증명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공고방법 등 : 일반이 공람하기 쉬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및 감리자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통보할 것(FAX 등으로 신속히 통보)

나.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

(1) 감리자지정권자는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공고내용에 의한 관련서류 및 밀봉된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접수한 후, 별표 1의 감리자(감리원)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2) 감리자지정권자는 응모서류의 내용 및 행정처분사항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

다. 감리자의 지정

별표1의 감리자(감리원)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감리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입찰자격을 득한 감리자의 참관하에 감리입찰서를 개봉하여 최저가로 응모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1)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수행자를 우선적으로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수행자가 감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2) 별표 1에 의한 평가결과 동점자(80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

(3) 감리입찰서 개봉시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이 많은 순으로 감리자를 지정

(4) 응모서류의 허위작성·위조·고의누락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응모한 감리자 및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기 지정

된 감리원을 중복하여 응모하는 감리자는 당해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나머지 감리자에 한하여 입찰가격을 부여

라. 감리자 지정통보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사업주체, 감리자,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규모·기간·공정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감리원배치계획서를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3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는 동 배치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별표1에 따라 평가된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정기간 이상 상주토록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감리원은 해당분야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다른 현장의 감리원으로 업무기간을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다. 현장 배치감리원의 교체는 감리자지정

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교체감리원은 감리자가 사업주체 및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감리원배치계획서에 의한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라.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후 감리자(감리원)가 응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감리자를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동 기준 “4. 감리자 지정방법” 다항에 의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의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에 따라 분류하되, 각 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동기준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로 배점하여야 한다.

바. 주택건설공사시 일부 시설물이 전력기술관리법령 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리대상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감리원(전기감리원 등)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은 별표 1의 감리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감리자(감리원) 평가기준

□ 분야별 배점

1. 감리원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감 리 원	60	
1. 책임감리원	(30)	
가. 기술자격	5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자격자”
나. 경력	13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학력·경력자”
다. 감리업무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감리업무 수행실적
라. 행정제재 여부	2	·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마. 상훈가산	2	· 가산 배점
2. 감리원(3명)	(30)	· 감리원 1인당 각 10점(10×3=30)
가. 기술자격	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자격자”
나. 경력	4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학력·경력자”
다. 감리업무 수행실적	3	· 최근 3년간 감리업무 수행실적
라. 행정제재 여부	1	·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마. 상훈가산	3	· 가산 배점(감리원 1인당 각1점, 1×3=3)

2.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 점	참 고 사 항
감리자(감리회사)	(40)	
가. 재정상태 견실도	13	· 감리자의 재정상태(재무제표증명원)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최근 3년간 감리업무수행한 연면적의 합계
다. 행정제재 여부	10	·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라. 설계용역 수행여부	5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수행 여부
마. 상훈가산	3	· 가산 배점

3. 지역가점(5점 이내)

※ 감리자지정권자가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

□ 분야별 평가방법

1. 감리원

1.1 책임감리원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책임감리원	(30)													
가. 기술자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자격자”의 인정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와 별도로 건축사·기술사의 경우는 다음 배점 기준에 의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건축사 기술사</th> <th>특급 감리원</th> <th>고급 감리원</th> <th>중급 감리원</th> <th>초급 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5</td> <td>4.5</td> <td>4</td> <td>3.5</td> <td>3</td> </tr> </tbody> </table>	구 분	건축사 기술사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 점	5	4.5	4	3.5	3
구 분	건축사 기술사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 점	5	4.5	4	3.5	3									
나. 경력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학력·경력자”의 인정방법에 따라 평가 · 배점기 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급 감리원</th> <th>고급 감리원</th> <th>중급 감리원</th> <th>초급 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13</td> <td>12</td> <td>11</td> <td>10</td> </tr> </tbody> </table>	구 분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 점	13	12	11	10		
구 분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 점	13	12	11	10										
다. 감리업무 수행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동주택(일반건축물은 80% 인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개월수의 합계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0월이상</th> <th>24월이상</th> <th>18월이상</th> <th>12월이상</th> <th>12월미만</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body> </table>	구 분	30월이상	24월이상	18월이상	12월이상	12월미만	배 점	10	9	8	7	6
구 분	30월이상	24월이상	18월이상	12월이상	12월미만									
배 점	10	9	8	7	6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라. 행정제재 여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 처벌을 받은 기간 또는 벌점에 따라 배점 · 배점기준 ※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없음</th> <th>2개월미만 (2점미만)</th> <th>4개월미만 (5점미만)</th> <th>6개월미만 (10점미만)</th> <th>6개월이상 (10점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2</td> <td>1.2</td> <td>0.6</td> <td>0.2</td> <td>0</td> </tr> </tbody> </table>	구 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6개월이상 (10점이상)	배점	2	1.2	0.6	0.2	0
구 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6개월이상 (10점이상)									
배점	2	1.2	0.6	0.2	0									
마. 상훈가산	2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대상 공동주택의 감리와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복수 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부여(감사장, 공로장은 배점대상에서 제외)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대통령, 국무총리, 장관</th> <th>시· 도지사</th> <th>시·군· 구청장</th> <th>없 음</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2</td> <td>1.5</td> <td>1</td> <td>0</td> </tr> </tbody> </table>	구 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없 음	배점	2	1.5	1	0		
구 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없 음										
배점	2	1.5	1	0										

1.2. 감리원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감리원(3명) (건축, 토목, 기타 설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3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평가하고 배점은 적용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1.5를 곱한 값으로 평점하며, “라. 행정제재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가. 기술자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자격자”의 인정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와 별도로 건축사·기술사의 경우는 다음 배점 기준에 의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건축사 기술사</th> <th style="width: 15%;">특급 감리원</th> <th style="width: 15%;">고급 감리원</th> <th style="width: 15%;">중급 감리원</th> <th style="width: 15%;">초급 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2</td> <td>1.5</td> <td>1</td> <td>0.5</td> <td>0</td> </tr> </tbody> </table>	구 분	건축사 기술사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점	2	1.5	1	0.5	0
구 분	건축사 기술사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점	2	1.5	1	0.5	0									
나. 경력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학력·경력자”의 인정방법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특급 감리원</th> <th style="width: 15%;">고급 감리원</th> <th style="width: 15%;">중급 감리원</th> <th style="width: 15%;">초급 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4</td> <td>3.5</td> <td>3</td> <td>2.5</td> </tr> </tbody> </table>	구 분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점	4	3.5	3	2.5		
구 분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배점	4	3.5	3	2.5										
다. 감리업무 수행실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동주택(일반건축물은 80% 인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개월수의 합계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30월이상</th> <th style="width: 15%;">24월이상</th> <th style="width: 15%;">18월이상</th> <th style="width: 15%;">12월이상</th> <th style="width: 15%;">12월미만</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3</td> <td>2.5</td> <td>2</td> <td>1.5</td> <td>1</td> </tr> </tbody> </table>	구 분	30월이상	24월이상	18월이상	12월이상	12월미만	배 점	3	2.5	2	1.5	1
구 분	30월이상	24월이상	18월이상	12월이상	12월미만									
배 점	3	2.5	2	1.5	1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라. 행정제재 여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 처벌을 받은 기간 또는 벌점에 따라 배점 · 배점기준 ※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없음</th> <th>2개월미만 (2점미만)</th> <th>4개월미만 (5점미만)</th> <th>6개월미만 (10점미만)</th> <th>6개월이상 (10점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1</td> <td>0.6</td> <td>0.3</td> <td>0.1</td> <td>0</td> </tr> </tbody> </table>	구 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6개월이상 (10점이상)	배 점	1	0.6	0.3	0.1	0
구 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6개월이상 (10점이상)									
배 점	1	0.6	0.3	0.1	0									
마. 상훈가산	1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대상 공동주택의 감리와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복수 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부여(감사장, 공로장은 배점대상에서 제외)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대통령, 국무총리, 장관</th> <th>시· 도지사</th> <th>시·군· 구청장</th> <th>없 음</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1</td> <td>0.6</td> <td>0.3</td> <td>0</td> </tr> </tbody> </table>	구 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없 음	배 점	1	0.6	0.3	0		
구 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없 음										
배 점	1	0.6	0.3	0										

2. 감리자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감리자	(40)													
가. 재정상태 건설도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자산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높은 순으로 배점(6)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준</th> <th>상위 15%이상</th> <th>15%미만~ 30%이상</th> <th>30%미만~ 45%이상</th> <th>45%미만~ 60%이상</th> <th>60%미만</th> </tr> </thead> <tbody> <tr> <td>배 점</td> <td>6</td> <td>5.5</td> <td>5</td> <td>4.5</td> <td>4</td> </tr> </tbody> </table>	기 준	상위 15%이상	15%미만~ 30%이상	30%미만~ 45%이상	45%미만~ 60%이상	60%미만	배 점	6	5.5	5	4.5	4
기 준	상위 15%이상	15%미만~ 30%이상	30%미만~ 45%이상	45%미만~ 60%이상	60%미만									
배 점	6	5.5	5	4.5	4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이 낮은 순으로 배점(7) 배점기준 <table border="1" data-bbox="458 426 1204 591"> <tr> <th>기 준</th> <th>상위 15%이상</th> <th>15%미만~ 30%이상</th> <th>30%미만~ 45%이상</th> <th>45%미만~ 60%이상</th> <th>60%미만</th> </tr> <tr> <td>배 점</td> <td>7</td> <td>6.5</td> <td>6</td> <td>5.5</td> <td>5</td> </tr> </table> 	기 준	상위 15%이상	15%미만~ 30%이상	30%미만~ 45%이상	45%미만~ 60%이상	60%미만	배 점	7	6.5	6	5.5	5
기 준	상위 15%이상	15%미만~ 30%이상	30%미만~ 45%이상	45%미만~ 60%이상	60%미만									
배 점	7	6.5	6	5.5	5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동주택(일반건축물은 80% 인정)을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인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배점 배점기준 <table border="1" data-bbox="458 852 1204 1039"> <tr> <th>기 준</th> <th>상위 15%이상</th> <th>15%미만~ 30%이상</th> <th>30%미만~ 45%이상</th> <th>45%미만~ 60%이상</th> <th>60%미만</th> </tr> <tr> <td>배 점</td> <td>12</td> <td>11</td> <td>10</td> <td>9</td> <td>8</td> </tr> </table> 	기 준	상위 15%이상	15%미만~ 30%이상	30%미만~ 45%이상	45%미만~ 60%이상	60%미만	배 점	12	11	10	9	8
기 준	상위 15%이상	15%미만~ 30%이상	30%미만~ 45%이상	45%미만~ 60%이상	60%미만									
배 점	12	11	10	9	8									
다. 행정제재 여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 처벌을 받은 기간 또는 벌점에 따라 배점 배점기준 ※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 <table border="1" data-bbox="458 1315 1204 1495"> <tr> <th>구 분</th> <th>없음</th> <th>2개월미만 (2점미만)</th> <th>4개월미만 (5점미만)</th> <th>6개월미만 (10점미만)</th> <th>6개월이상 (10점이상)</th> </tr> <tr> <td>배 점</td>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able> 	구 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6개월이상 (10점이상)	배 점	10	8	6	4	2
구 분	없음	2개월미만 (2점미만)	4개월미만 (5점미만)	6개월미만 (10점미만)	6개월이상 (10점이상)									
배 점	10	8	6	4	2									
라. 설계용역 수행여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감리자 												

항 목	배 점	적 용 기 준										
<p>마. 상훈가산</p>	<p>3 (가점)</p>	<p>·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대상 공동주택의 감리와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복수 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부여(감사장, 공로장은 배점대상에서 제외)</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58 564 1205 726"> <thead> <tr> <th data-bbox="458 564 573 658">구 분</th> <th data-bbox="573 564 824 658">대통령, 국무총리, 장관</th> <th data-bbox="824 564 952 658">시·도지사</th> <th data-bbox="952 564 1079 658">시·군·구청장</th> <th data-bbox="1079 564 1205 658">없 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8 658 573 726">배점</td> <td data-bbox="573 658 824 726">3</td> <td data-bbox="824 658 952 726">2</td> <td data-bbox="952 658 1079 726">1</td> <td data-bbox="1079 658 1205 726">0</td> </tr> </tbody> </table>	구 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없 음	배점	3	2	1	0
구 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없 음								
배점	3	2	1	0								

3. 지역가점(5점이내)

감리자지정권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건설되는 시·군·구지역의 감리자는 5점(시·도 지역의 감리자는 2점)의 범위내에서 이 기준에 의한 평점결과에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가 당해 감리자 지정공고시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분야별 평가 세부기준

1. 감리원의 기술분야 분류방법

가. 책임감리원은 기술분야 중 “건축분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공사는 고급감리원 이상,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특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나. 동 기준 별표 1에 의한 감리원별 기술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에 따르되, 평가대상 감리원중 “기타 설비분야”라 함은 건축·기계·전기·안전관리분야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술사·기사 등을 말하는 것임.

2. 감리원의 “감리업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대상 감리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소속직원으로서 당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동 기준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실적으로 인정함.

3. 감리원의 “기술자격” 및 “경력”에 대한 평가방법(예시)

가. 대학졸업(학사)후 6년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기사1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에 의한 감리원자격규정중
· 기술자격사항목에서 “초급감리원”
· 학력·경력사항목에서 “중급감리원”으로 인정하여 평점

나. 전문대학 졸업후 10년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항 [별표 3]에 의한 감리원자격규정중
· 기술자격사항목에서 “기술사”
· 학력·경력사항목에서 “중급감리원”으로 인정하는 평점

구비서류		
감리원 (책임감리원포함)	자격증명서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② 해당 교육기간 발행 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③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감리업무수행실적	④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 경력증명서
	행정제재부여	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상훈증명서	⑥ 최근 3년간 해당 행정기관의 상훈수여 증명서
감리자 (회사)	재정상태견실도	⑦ 재무제표 증명원(사업자등록세무서에서 발행한것,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등록시 또는 공고일 이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
	설계용역수행여부	⑧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감리업무수행실적	⑨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수주실적 증명서
	행정제재부여	⑩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상훈증명서	⑪ 최근 3년간 해당 행정기관의 상훈수여 증명서
<p>해당 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p>※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p>		

